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72 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백영기 [6574]/ 보험정책급여팀장 고영옥 [6581]/ 팀원 이승아 [6572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8168호

시행일자 2026. 10. 19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(2026년 10월)

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심사평가조정부-2187(2026. 10. 16.)

2. 상기 근거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,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요내용(총 8항목, 95사례) *2026. 10월 중 공개 예정

1.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(VAD) 요양급여 대상여부(13사례)
2.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대상여부(1사례)
3. Burosumab 주사제(품명: 크리스비타주) 요양급여 대상여부(7사례)
4. Nusinersen sodium 주사제(품명: 스핀라자주) 및 Risdiplam 경구제(품명: 에브리스디건조시럽) 요양급여 대상여부(47사례)
5.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(품명: 졸겐스마주) 성과평가(10사례)
6.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,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시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CANNULATED SCREW 요양급여 인정여부(15사례)
7. 림프기질성 위암종(GCLS)에 시행한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(ESD) 요양급여 인정여부(1사례)
8.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른 osimertinib(품명: 타그리소정) 요양급여 인정여부(1사례)

○ 요양기관업무포털(https://biz.hira.or.kr →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심사기준 → 공개심의사례)에서 조회 가능함

○ 의협 홈페이지(https://www.kma.org) '공지·뉴스-건강보험 고시 안내' 에도 안내되었음

#붙임 : 2026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